

수 신 회원 각위

참 조

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의견 개선 요청

1.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전문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(안)*(김종양 의원 대표발의)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7. 22.(수)까지 회원사의 찬성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.

- △ 근로자 이동·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(안 제40조의2)
- △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제175조제6항제3호)

☐ 국회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방법

- ① [국회 입법예고 시스템] 접속(<https://pal.assembly.go.kr/>)
- ② <법률안검색>에 “산업안전보건법” 검색
- ③ **의안번호(2219877)**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양의원 등 11인)글 선택
- ④ 게시글 하단 <의견등록> 선택 후 의견작성

붙 임 관련문서 1식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 장 윤 태 연



담당자 주임 박경재 협조자 부장 이재관 실장 하재중 사무처장 경승현
시 행 전건협 대전 제360호(2026. 7. 16.)

우35233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220번길 54, 3층(둔산동, 전문건설회관)/<https://daejeon.kosca.or.kr/>
전 화 042-472-5191 전 송 042-472-5197 전자우편 paxrk@kosca.or.kr